

1. 주요내용

통계청에 통계데이터허브기능 강화 및 조사방법 선진화를 위하여 통계 데이터허브국에 통계등록부와 및 조사관리국에 스마트조사센터를 각각 신설하고, 경제통계기획기능 강화 및 SNA 중심의 경제통계 생산을 위해 소득통계개발과를 폐지하고 경제통계기획과 및 소득통계과로 기능을 이관하며, 통계작성기관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통계대행과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사관리국에 설치한 비대면조사팀을 폐지하며,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을 위하여 기업통계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지능정보화팀의 기한을 2025. 2. 25.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운전서기·방호서기, 운전서기보·방호서기보를 각각 행정·기술직군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정책과·통계기준과·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을 “통계정책과·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과·통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4항 중 “행정통계과”를 “행정통계과, 통계등록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행정자료 서식의 표준화 등 행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모집단(母集團)자료 관리의”를 “행정자료 활용”으로, “총괄”을 “운영 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통계과장”을 “통계등록부과장”으로 한다.

2. 행정자료 입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3.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및 표준화
4. 행정자료 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제2조의2제7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계등록부의 기획 및 구축
2. 통계등록부의 연계 및 활용

⑧ 행정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개발

2. 행정통계의 작성 및 분석

제3조제4항 중 “경제통계기획과·경제총조사과·산업통계과·산업동향과·서비스업동향과·물가동향과·소득통계과 및 소득통계개발과를”을 “경제통계기획과·소득통계과·경제총조사과·산업통계과·산업동향과·서비스업동향과·물가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을”로, “보한다”를 “보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간 지역산업연관표 개발 및 관련 조사 수행

제3조제5항제3호 중 “기업생멸(生滅)행정통계”를 “국민계정의 양적 보완지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1항을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산업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제3조제6항(중전의 제1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소득계정 시의성 개선

7. 지역소득계정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통계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3조제1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계정의 양적 보완지표”를 “기업생멸(生滅)행정통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지역소득계정 개선”을 “기업통계 작성”으로 한다.

1.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
4.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

제5조제2항 중 “조사기획과·인구총조사과·표본과·통계대행과 및 비대면조사팀을”을 “조사기획과·인구총조사과·표본과 및 비대면조사센터”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3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통계 조사·작성 등의 대행(이하 이 항에서 “국가통계대행”이

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0.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11.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12. 국가통계대행과 관련된 현장조사의 관리

13. 국가통계대행 결과의 제공

제5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대면조사팀장”을 “스마트조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비대면조사”를 각각 “스마트조사”로 한다.

1. 스마트조사의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별표 3 운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운전서기 78”을 신설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운전서기 78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를 신설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78”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삭제하며, “운전서기보 3”를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3의2 운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운전서기 78”을 신설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운전서기 78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를 신설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78”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를 삭제하며, “운전서기보 3”를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4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 다음에 “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공업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를 신설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공업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3”를 신설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5”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를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1”를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5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02 다음에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보 498”을 신설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

서기 또는 방호서기보 498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33”를 신설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498”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8”를 삭제하며, “운전서기보 7”를 삭제하고, “방호서기보 8”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01 다음에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82”를 신설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82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25”를 신설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482”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8”를 삭제하며, “운전서기보 7”를 삭제하고, “방호서기보 8”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3년 2월 25일”을 “2025년 2월 2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업통계팀은 2028년 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통계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통계정책국) ① (생략)	제2조(통계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통계정책국에 <u>통계정책과·통계기준과·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과</u>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u>통계정책과·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과·통계기준</u> ----- ----- ----- -----.
③·④ (생략)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⑥ (생략)	③·④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 ③ (생략)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계데이터허브국에 <u>통계데이터기획과</u> , 행정자료관리과,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마이크로데이터과, 통계서비스기획과, 조사시스템관리과, 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	④ ----- <u>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등록부과</u> ----- ----- ----- ----- ----- ----- ----- -----

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행정자료 서식의 표준화 등
행정자료 활용 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⑥ 행정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모집단(母集團)자료 관리의
기획 및 총괄

2.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3. 행정자료의 정비 및 조사자
료와 행정자료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
템의 개발 및 운영

⑦ 행정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자료 활용 총괄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신설>

-----.

⑤ -----
-----.

1.·2. (현행과 같음)

3. 행정자료 -----

4. ~ 7. (현행과 같음)

⑥ -----
-----.

1. 행정자료 활용 -----
----- 운영 총괄

2. 행정자료 입수 및 데이터베
이스 구축·관리

3.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및 표준화

4. 행정자료 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⑦ 통계등록부과장-----
-----.

1. 통계등록부의 기획 및 구축

2. 통계등록부의 연계 및 활용

⑧ 행정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⑧ ~ ⑬ (생략)

제3조(경제통계국) ① ~ ③ (생략)

④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 · 경제총조사과 · 산업통계과 · 산업동향과 · 서비스업동향과 · 물가동향과 · 소득통계과 및 소득통계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기업생멸(生滅)행정통계 작성 및 분석

4.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분장한다.

1.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개발

2. 행정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⑨ ~ ⑭ (현행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3조(경제통계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제통계기획과 · 소득통계과 · 경제총조사과 · 산업통계과 · 산업동향과 · 서비스업동향과 · 물가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을 -----

-----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1. (현행과 같음)

2. 연간 지역산업연관표 개발 및 관련 조사 수행

3. 국민계정의 양적 보완지표 -----

<삭제>

작성

5. (생략)

⑥ (생략)

⑦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신설>

4. ~ 6. (생략)

⑧ ~ ⑩ (생략)

⑪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3.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

<신설>

4. ~ 6. (생략)

<신설>

7. (생략)

⑫ 소득통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간 지역산업연관표 개발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

1. 2.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산업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
항까지와 같음)

⑥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6. 지역소득계정 시의성 개선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7. 지역소득계정 개선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⑫ 기업통계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

및 관련 조사 수행

2. 국민계정의 양적 보완지표
작성 및 분석

3. 지역소득계정 시의성 개선
연구

<신 설>

4. 그 밖에 지역소득계정 개선
에 관한 사항

제5조(조사관리국) ① (생 략)

②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 ·
인구총조사과 · 표본과 · 통계대
행과 및 비대면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
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
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으로 보한다. <후단 신
설>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삭 제

4. ~ 11. (생 략)

<신 설>

시

2. 기업생멸(生滅)행정통계 ----

3.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

4.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

5. ----- 기업통계 작성-----

제5조(조사관리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조사기획과 ·
인구총조사과 · 표본과 및 비대
면조사센터를 -----

----- 보한다. 센터
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

4. ~ 11. (현행과 같음)

12.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신 설>

<신 설>

<신 설>

12. (생 략)

④ 삭 제

⑤ · ⑥ (생 략)

⑦ 통계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통계 조사 · 작성 등의
대행(이하 이 항에서 “국가통
계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기
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3.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4. 국가통계대행과 관련된 현장
조사의 관리

5. 국가통계대행 결과의 제공

⑧ 비대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기획재정부령 제7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13.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14. 국가통계대행과 관련된 현
장조사의 관리

15. 국가통계대행 결과의 제공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⑨ 비대면조사센터장-----
-----.

1. ~ 5.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7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능정보화팀은 <u>2023년 2월 25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능정보화팀은 <u>2025년 2월 25일까지</u> 존속한다.

신·구정원대비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 통계서기, 공업서기, 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운전서기	<신 설>	78	+78
행정서기보, 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전산서기보, 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신 설>	6	+6
행정서기, 통계서기, 공업서기, 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78	<삭 제>	-78
행정서기보, 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	<삭 제>	-2
,	,	,	
운전서기보	3	<삭 제>	-3
사무운영서기보	8	7	-1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행정서기, 통계서기, 공업서기, 전산서기</u> 또는 <u>농업서기, 운전서기</u> <u>행정서기보, 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전산서기보, 농업서기보</u> 또는 <u>운전서기보</u> <u>행정서기, 통계서기, 공업서기, 전산서기</u> 또는 <u>농업서기</u> <u>행정서기보, 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전산서기보</u> 또는 <u>농업서기보</u> , <u>운전서기보</u> <u>사무운영서기보</u> ,	, , <u><신 설></u> <u><신 설></u> <u>78</u> <u>2</u> , <u>3</u> <u>8</u> ,	, , <u>78</u> <u>6</u> <u><삭 제></u> <u><삭 제></u> , <u><삭 제></u> <u>7</u> ,	+78 +6 -78 -2 -3 -1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 통계서기, 전산서기, 농업서기, 공업서기,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신 설>	5	+5
행정서기보, 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농업서기보, 사서서기보, 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신 설>	3	+3
행정서기, 통계서기, 전산서기, 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5	<삭 제>	-5
행정서기보, 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	<삭 제>	-1
방호서기보	1	<삭 제>	-1
운전서기보	1	<삭 제>	-1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 통계서기, 전산서기, 농업서기, 공업서기,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신 설>	5	+5
행정서기보, 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농업서기보, 사서서기보, 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신 설>	3	+3
행정서기, 통계서기, 전산서기, 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5	<삭 제>	-5
행정서기보, 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	<삭 제>	-1
방호서기보	1	<삭 제>	-1
운전서기보	1	<삭 제>	-1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u>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u> <u>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u> <u>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보</u>	<신 설>	498	+498
<u>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u> <u>기보·농업서기보·사서서기보·</u> <u>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u>	<신 설>	133	+133
<u>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u> <u>농업서기·전산서기</u> 또는 <u>사서서기</u>	498	<삭 제>	-498
<u>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u> <u>기보·농업서기보</u> 또는 <u>사서서기보</u>	118	<삭 제>	-118
운전서기보	7	<삭 제>	-7
방호서기보	8	<삭 제>	-8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 통계서기, 공업서기, 농업서기, 전산서기, 사서서기,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신 설>	482	+482
행정서기보, 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농업서기보, 사서서기보, 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신 설>	125	+125
행정서기, 통계서기, 공업서기, 농업서기, 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482	<삭 제>	-482
행정서기보, 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8	<삭 제>	-118
운전서기보	7	<삭 제>	-7
방호서기보	8	<삭 제>	-8
,	,	,	